

<불임 1>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p><u>금융회사</u> <u>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u> <u>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u> <u>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u> <u>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u> <u>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u> <u>이에 대한 자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u> </p>	
⑥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조문번호 변경
① 제4항, 제5항 및 <u>제6항</u> 에 따라 변	⑧ ----- <u>제7항</u> -----	조문번호

	<u>금액을 함께 통</u>	
	<u>지하여야 합니다.</u>	
③ ~ ④ 략) (생 ⑤	③ ~ ④ (현행과 같음) <u>⑤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u> 이며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 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 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령 반영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⑥ (신설)	<u>⑥ 금융회사가 제5항에 의하여 기한</u> 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 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 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	①----- <u>제6항에</u> -----	

<p>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 우라도, 제8조<u>제5항</u>에 해당되어 기한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 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생 략)</p>	<p>----- ----- <u>제7항</u> ----- ----- -----.</p>	
<p>④ <u>(신설)</u></p>	<p><u>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 우 금융회사는 제8조 제5항 및 제6 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개인채무 자보호법 령 반영 (보증인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p>
<p>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p> <p>① ~ ③ (생 략)</p> <p>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합니다.</p>	<p>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p> <p>----- <u>제7항</u> -----.</p>	<p>조문번호 변경</p>

제23조의3 (채무조정 요청)	제23조의3 (채무조정 요청)	
<p>① ~ ② (신 설)</p>	<p>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대상 거래 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 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 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 무자가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회사에</p>	<p>개인채무 자보호법 령 반영 (채무조정 요청 근거 명시)</p>

	<p><u>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외의 법률에서 채무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u></p>	
제25조 (약관 · 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	①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u>변경약관을</u>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약</u>		
관이 변경된 직후 게시합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금융당국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권고에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파른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	공시
② <u>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 서면, 전자우편(E-MAIL</u>	② <u>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즉시) 서면, 전자우편(E-MAIL</u>	내용 강화

